[파주운정신도시 1,2지구 B3블록] 운정 아이파크 더 테라스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방역 관련 안내사항
- [운정 아이파크 더 테라스]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우려로 인하여 견본주택 관람을 방문예약제 및 사이버 견본주택으로(http://unjeong-ipark-theterrace.com/) 동시 운영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증 예방을 위한 사항
 ※ 견본주택 관람은 사이버 견본주택(http://unjeong-ipark-theterrace.com/) 방문예약 시스템으로 운영 예정입니다.
 ※ 당첨자는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을 하여야 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 추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에 따른 당첨자 서류제출, 계약일정 및 견본주택 관람 계획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변경시 개별통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마스크 및 비닐장갑 미착용, 손 소독제, 비접촉체온계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를 통한 체온 37.5도가 넘을 경우
 ※ 견본주택 관람 중 마스크 및 비닐장갑 미착용 등 견본주택 안내요원의 협조에 불응하는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 분양상담전화(1600-0883)를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간혹 폭주하는 상담 전화와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 려 드 립 니 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2020.04.17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0.09.10.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입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57조 제1항에 의한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 민영주택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파주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비과밀억제권역)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파주시)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을 소유하신 분도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7호)	**7년간(신설, '20.4.17 이후 모집승인 신청분부터)**		
-토지임대주택(제1항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제2항제7호가목)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제2항제1·2·4·6·8호)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년**
		85초과	**3년**
	그 외	85이하	**3년**
		85초과	**1년**

■ 본 공동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10.)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 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4조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입주자모집공고일(2020.09.10.) 현재 파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한자(2019.09.10. 이전부터 거주)에게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자(2020.03.10. 이전부터 거주)에게 20%를 공급(파주시 공급신청자가 공급량에 미달될 경우에는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해당지역 거주자로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출생년도부터 현재까지 기간지정으로 발급)를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신청 하거나, 청약신청이 불가할 수도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 당첨, 계약시 「주택법」 제65조제1항 위반에 해당하오니 청약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기존 주택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함)

■ 본 공동주택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 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합니다.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소유로 봄 (*미분양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매매대금 완납일'(실거래신고서상) 기준 주택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2009.04.01.「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은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0조제①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감정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의 청약자격이 개정되었으니 청약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무주택군인 → (변경)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유주택자도 청약 가능)
- (기존)입주자저축 1년 이상 가입자 → (변경)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5조의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는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합니다.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30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분양 홈페이지(http://unjeong-ipark-theterrace.com.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퍼센트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퍼센트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합니다.

 * 단,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합니다.(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의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주택법」제57조제①항 규정에 의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주택법」제64조 및「주택법시행령」제73조 및 [별표3] 전매행위 제한기간 규정에 의거 본 공동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3년 동안 전매가 금지되며(주택법 시행령 별표3 제4호에 의거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로서 그 기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 그 기간에 도달한 것으로 봄), 전용면적 85㎡초과 주택으로서 일반공급 주택수의 100%를 추첨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공동주택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2018.12.1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공급질서 교란자 처벌(「주택법」 제64조 및 제65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주택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자에 대하여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되며, 최초계약자의 공급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사업주체와 권리의무승계를 받은 매수자(전매자)와의 계약도 취소됩니다. 이에 대하여 계약자(전매자 포함)은 어떠한 사유(선의의 피해 등)로도 사업주체나 해당관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거래 당사자는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에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당기간에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등 추가 계약의 체결로 인해 총 계약금액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신고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한국감정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종전에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다자녀, 노부모부양)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2020년 09월 21일(월)	2020년 09월 22일(화)	2020년 09월 23일(수)	2020년 09월 29일(화)	2020년 10월 05일(월) ~ 10월 08일(목)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14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당사 견본주택 방문 접수 (10:00~16:00)	당사 견본주택 방문 계약 (10:00~16:00)
장 소	■ 견본주택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및 애플앱스토어 "청약홈"검색)			■ 당첨자별 서류접수 및 계약 일정은 당첨자 발표이후 개별통보 - 방문 일시는 온라인 예약 시스템 활용 예정 - 당첨자(대리 계약자)외의 내방은 제한됨 - 자격검증 및 계약체결일정 및 운영시간 변경가능 ■ 견본주택 - 주소 :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154(와동동 1408번지) - 문의: 1600-0883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Ⅰ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파주시 주택과 - 40050호(2020.09.03.)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파주시 운정 1,2지구 B3블록

■ **공급규모 및 내역 :** 지하 1층, 지상 4층 11개동 총 186세대 [다자녀 특별공급 18세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5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공급대상 및 면적**

(단위 : ㎡, 세대)

구분	주택관리 번호	모델	주택형 (주거전용 면적기준)	주택공급면적			기타공용 면적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분양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전용 면적	주거공용 면적	소계					다자녀 가구	노부모 부양	소계		
민영 주택	2020001022	01	85.6825A	85.6825	21.8636	107.5461	74.8711	182.4172	111.2351	9	1	1	2	7	해당없음
		02	85.6885B	85.6885	22.0476	107.7361	74.8764	182.6125	111.2429	11	1	-	1	10	
		03	85.9155C	85.9155	22.6281	108.5436	75.0748	183.6184	111.5376	22	2	-	2	20	
		04	85.9155D	85.9155	22.6281	108.5436	75.0748	183.6184	111.5376	22	2	-	2	20	
		05	85.6885E(Ba)	85.6885	22.0476	107.7361	74.8764	182.6125	111.2429	11	1	1	2	9	
		06	101.6315A	101.6315	25.5516	127.1831	88.8077	215.9908	131.9405	17	1	1	2	15	
		07	101.9360B	101.9360	26.1604	128.0964	89.0738	217.1702	132.3358	18	2	1	3	15	
		08	101.6790C	101.6790	25.8210	127.5000	88.8493	216.3493	132.0022	18	2	-	2	16	
		09	101.6790D	101.6790	25.8210	127.5000	88.8493	216.3493	132.0022	18	2	-	2	16	
		10	124.7345A	124.7345	30.2297	154.9642	108.9956	263.9598	161.9334	10	1	1	2	8	
		11	124.6783B	124.6783	30.8342	155.5125	108.9465	264.4590	161.8604	10	1	-	1	9	
		12	124.7048C	124.7048	30.4579	155.1627	108.9696	264.1323	161.8948	10	1	-	1	9	
		13	124.7048D	124.7048	30.4579	155.1627	108.9696	264.1323	161.8948	10	1	-	1	9	
	합 계									186	18	5	23	163	

- 85.6885E(Ba)세대는 한국감정원 청약홈에서 청약신청시 주택형 85.6885E로 표기되고, 인허가 도서,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문 등 이외 자료에서는 85Ba로 표기됨을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단,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에 대해서는 차후 정산금액 없음)
- 주택규모 표시방법은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를 평으로 환산하는 방법 : ㎡ × 0.3025 또는 ㎡ ÷ 3.3058)
- 주택형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주택전시관 및 카탈로그, 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유의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당해 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 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각 주택형별로 공급물량이 있는 주택형에 대하여만 청약신청이 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주택전시관에 설치된 세대, 모형물과 팜플렛 등으로 대상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대지지분은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였으며, 상기 공부상 면적과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실측 정리 또는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계약면적과 등기면적이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면적차이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습니다.
- 대지지분은 본 대지의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가감속 차로 기부채납(예정) 면적을 제외한 실사용 대지면적을 각 세대의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준공 시 기부채납 면적 확정에 따라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85.6825A	85.6885B	85.6885E(Ba)	85.9155C	85.9155D	101.6315A	101.9360B	101.6790C	101.6790D	124.7345A	124.6783B	124.7048C	124.7048D
약식표기	85A	85B	85E(Ba)	85C	85D	101A	101B	101C	101D	124A	124B	124C	124D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분양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원 / 부가가치세포함)

주택형 (약식)	동	층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1차	2차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계약시	계약 후 1개월 내	2020.12.17	2021.03.17	2021.06.17	2021.09.17	2021.12.17	2022.03.17	입주 지정일
85A	103동, 104동, 107동 2~3호	1층	6	230,329,600	238,809,200	23,861,200	493,000,000	10,000,000	3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49,300,000	147,900,000
	107동 1호, 110동 7~8호	1층	3	241,822,720	250,725,440	25,051,840	517,600,000	10,000,000	41,760,000	51,760,000	51,760,000	51,760,000	51,760,000	51,760,000	51,760,000	155,280,000
85B	102동 1호	2층	1	241,822,720	250,725,440	25,051,840	517,600,000	10,000,000	41,760,000	51,760,000	51,760,000	51,760,000	51,760,000	51,760,000	51,760,000	155,280,000
	103동, 104동, 107동 2~4호	2층	7	239,533,440	248,351,880	24,814,680	512,700,000	10,000,000	41,270,000	51,270,000	51,270,000	51,270,000	51,270,000	51,270,000	51,270,000	153,810,000
	107동 1호, 110동 7~8호	2층	3	263,500,800	273,201,600	27,297,600	564,000,000	10,000,000	4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56,400,000	169,200,000
85E(Ba)	101동, 102동 2~6호	2층	11	248,784,000	257,943,000	25,773,000	532,500,000	10,000,000	43,250,000	53,250,000	53,250,000	53,250,000	53,250,000	53,250,000	53,250,000	159,750,000
85C	101동, 102동	3층	12	243,784,960	252,759,920	25,255,120	521,800,000	10,000,000	42,180,000	52,180,000	52,180,000	52,180,000	52,180,000	52,180,000	52,180,000	156,540,000
	103동, 104동, 107동 2~4호	3층	7	248,784,000	257,943,000	25,773,000	532,500,000	10,000,000	43,250,000	53,250,000	53,250,000	53,250,000	53,250,000	53,250,000	53,250,000	159,750,000
	107동 1호, 110동 7~8호	3층	3	273,639,040	283,713,080	28,347,880	585,700,000	10,000,000	48,570,000	58,570,000	58,570,000	58,570,000	58,570,000	58,570,000	58,570,000	175,710,000
85D	101동, 102동	4층	12	273,031,680	283,083,360	28,284,960	584,400,000	10,000,000	48,440,000	58,440,000	58,440,000	58,440,000	58,440,000	58,440,000	58,440,000	175,320,000
	103동, 104동, 107동 2~4호	4층	7	278,638,080	288,896,160	28,865,760	596,400,000	10,000,000	4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59,640,000	178,920,000
	107동 1호, 110동 7~8호	4층	3	306,483,200	317,766,400	31,750,400	656,000,000	10,000,000	5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65,600,000	196,800,000
101A	105동 2~4호, 106동 3~4호, 108동 3호, 109동3~6호, 110동 3~6호	1층	14	260,370,560	269,956,120	26,973,320	557,300,000	10,000,000	45,73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55,730,000	167,190,000
	105동 1호, 110동 1~2호	1층	3	273,405,440	283,470,880	28,323,680	585,200,000	10,000,000	48,520,000	58,520,000	58,520,000	58,520,000	58,520,000	58,520,000	58,520,000	175,560,000

101B	105동 2~4호, 106동 3~4호, 108동 3~4호, 109동3~6호, 110동 3~6호	2층	15	270,789,120	280,758,240	28,052,640	579,600,000	10,000,000	47,960,000	57,960,000	57,960,000	57,960,000	57,960,000	57,960,000	57,960,000	173,880,000
	105동 1호, 110동 1~2호	2층	3	297,886,720	308,853,440	30,859,840	637,600,000	10,000,000	53,760,000	63,760,000	63,760,000	63,760,000	63,760,000	63,760,000	63,760,000	191,280,000
101C	105동 2~4호, 106동 3~4호, 108동 3~4호, 109동3~6호, 110동 3~6호	3층	15	281,441,280	291,802,560	29,156,160	602,400,000	10,000,000	50,240,000	60,240,000	60,240,000	60,240,000	60,240,000	60,240,000	60,240,000	180,720,000
	105동 1호, 110동 1~2호	3층	3	309,333,120	320,721,240	32,045,640	662,100,000	10,000,000	56,210,000	66,210,000	66,210,000	66,210,000	66,210,000	66,210,000	66,210,000	198,630,000
101D	105동 2~4호, 106동 3~4호, 108동 3,4호, 109동3~6호, 110동 3~6호	4층	15	314,939,520	326,534,040	32,626,440	674,100,000	10,000,000	57,410,000	67,410,000	67,410,000	67,410,000	67,410,000	67,410,000	67,410,000	202,230,000
	105동 1호, 110동 1~2호	4층	3	346,428,800	359,182,600	35,888,600	741,500,000	10,000,000	64,150,000	74,150,000	74,150,000	74,150,000	74,150,000	74,150,000	74,150,000	222,450,000
124A	106동 2호, 108동 2호, 109동 2호	1층	3	309,099,520	320,479,040	32,021,440	661,600,000	10,000,000	56,160,000	66,160,000	66,160,000	66,160,000	66,160,000	66,160,000	66,160,000	198,480,000
	106동 1호, 108동 1호, 109동 1호	1층	3	324,563,840	336,512,680	33,623,480	694,700,000	10,000,000	59,470,000	69,470,000	69,470,000	69,470,000	69,470,000	69,470,000	69,470,000	208,410,000
	111동	1층	4	340,028,160	352,546,320	35,225,520	727,800,000	10,000,000	62,780,000	72,780,000	72,780,000	72,780,000	72,780,000	72,780,000	72,780,000	218,340,000
124B	106동 2호, 108동 2호, 109동 2호	2층	3	321,573,760	333,412,520	33,313,720	688,300,000	10,000,000	58,830,000	68,830,000	68,830,000	68,830,000	68,830,000	68,830,000	68,830,000	206,490,000
	106동 1호, 108동 1호, 109동 1호, 111동	2층	7	353,623,680	366,642,360	36,633,960	756,900,000	10,000,000	65,690,000	75,690,000	75,690,000	75,690,000	75,690,000	75,690,000	75,690,000	227,070,000
124C	106동 2호, 108동 2호, 109동 2호	3층	3	333,907,840	346,200,680	34,591,480	714,700,000	10,000,000	61,470,000	71,470,000	71,470,000	71,470,000	71,470,000	71,470,000	71,470,000	214,410,000
	106동 1호, 108동 1호, 109동 1호, 111동	3층	7	367,219,200	380,738,400	38,042,400	786,000,000	10,000,000	6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78,600,000	235,800,000
124D	106동 2호, 108동 2호, 109동 2호	4층	3	373,666,560	387,423,120	38,710,320	799,800,000	10,000,000	69,980,000	79,980,000	79,980,000	79,980,000	79,980,000	79,980,000	79,980,000	239,940,000
	106동 1호, 108동 1호, 109동 1호, 111동	4층	7	411,042,560	426,175,120	42,582,320	879,800,000	10,000,000	7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87,980,000	263,940,000

※ 편집 및 인쇄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기 중도금 일정은 사업주체 또는 금융기관 사정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공급금액은「주택법」제57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총 금액을 기준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가 의결한 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로 차등을 두어 사업주체가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되어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자가 선택 계약하는 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은 추가 선택품목[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기타 추가선택품목 등] 비용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전용면적 및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등 주거공용면적과 관리사무실, 경비실,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전기/기계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주거공용면적 및 기타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소수점이하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또한 소수점이하 및 지적법상 허용오차 범위에서의 면적증감으로 공유대지지분의 면적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도 면적증감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지 아니합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층, 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함)
- 근린생활시설(단지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 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중도금은 당해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60조에 의거 납부하여야 하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얻어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본 공동주택의 분양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와 대출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일정 등은 별도 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요건 강화, 본인의 부적격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연체료 가산)
- 선납금액은 주택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고, 선납할인액은 상기 중도금 일정에 따라 계산됩니다.
- 중도금을 약정일 이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금액에 대하여 연 2%의 할인율(선납당일 기준)을 적용하여 선납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할인합니다. 단,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으로서, 사업주체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공동주택의 지번(공급위치), 단지 명칭, 동 표시, 외부 색채와 계획, 조경시설물 등이 관계기관 심의 및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모든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공동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 순위별로 접수를 받고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Ⅱ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 분		85A	85B	85E(Ba)	85C	85D	101A	101B	101C	101D	124A	124B	124C	124D	합계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6개월이상 거주자(50%)	1	1	1	1	1	1	1	1	1	1	1	1	1	13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50%)	0	0	0	1	1	0	1	1	1	0	0	0	0	5
	소 계	1	1	1	2	2	1	2	2	2	1	1	1	1	18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파주시 1년이상 거주자(30%)	1	0	1	0	0	0	1	0	0	0	0	0	0	3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50%)	0	0	0	0	0	0	0	0	0	1	0	0	0	1
	소 계	1	0	1	0	0	1	1	0	0	1	0	0	0	5
합 계		2	1	2	2	2	2	3	2	2	2	1	1	1	23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 용
1회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당첨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다자녀가구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파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다자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이내) : 1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만19세 미만의 직계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당첨자 선정방법

-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50%, 기타지역(서울, 인천, 경기도 6개월 미만)거주자에게 50%를 각각 배정하되, 경기도 청약자 중에서는 해당지역(파주시)1년 이상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해당지역 1년 이상 거주자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공급하고, 경기도 신청 결과 미달된 물량은 기타지역(서울·인천, 경기도 6개월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 (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 (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 (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 (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 (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해당 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 (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이내) : 5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면서 만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 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 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하고 피부양 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무주택기간에서 제외함)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고일 기준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나머지 수도권 내 거주자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Ⅲ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신청 자격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30%), 경기도 6개월 이상 거주자(20%), 나머지 수도권 내 거주자 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합니다.(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 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아니하여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봅니다. 또한, 수도권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됩니다. (2018.1.2.모집공고 승인분부터 적용)

■ 청약 예치기준금액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 분	파주시 및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 관련 예금	거주 구분
민영 주택	1순위	85㎡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 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파주시 (1년 이상) (30%) / 경기도 (6개월 이상) (20%)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6개월 미만) (50%)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2020.09.21. (월)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사업주체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사업주체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0.09.22. (화)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감정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대행은행 창구
	2순위	2020.09.23. (수) 08:00~17:30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인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공인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주택전시관 방문접수 시 구비서류는 본 공고에는 안내하지 아니하오니 접수(구비서류를 준비할 충분한 시간)전 별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견본주택에 비치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에 비치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불가함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청약 불가)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www.applyhome.co.kr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5항에 따라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는 필수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출입국사실증명원	직계 존·비속	• 직계존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제외 사항 * 30세 미만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중인 경우 * 30세 이상 :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10년 이상 군 복무 기간 명시)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함)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견본주택에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피부양 직계비속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재혼가정의 자녀일 경우 청약자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세대주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가점산정기준표	-	• 견본주택에 비치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등본 상 청약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을 포함,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해외에 체류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및 피부양 직계비속	• 본인 : 만30세 미만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자녀 : 만18세 이상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제3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불가함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		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여권 등)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인장	대리인	

※ 상기 제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구비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 공급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불가함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시 대리인 청약 불가) ※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등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거주지역 및 세대주 여부를 주민등록표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주소변동 사항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에 따라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존·비속의 경우 ※ 발급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5년 발급 (주민센터 또는 민원24 발급 가능)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직계존·비속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 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 만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상세로 발급)
		○	군복무기간(10년이상) 이 명시된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무주택 군인이 입주자저축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는 경우 (수도권 거주자로 당첨시)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인터넷청약자는 청약통장순위확인서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 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상세"로 발급)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시 은행에서는 청약자의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주택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으로만 청약접수를 받으므로 청약자는 본인의 청약자격(거주지역, 거주개시일,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등)을 신청 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 여부 판단 시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전원, 일반공급은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국토교통부의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정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인인증서를 청약 신청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청약신청」⇒「APT청약신청」⇒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업무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으로 이관 되면서, 아래와 같은 서비스가 추가로 제공됩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합니다.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을 검증합니다.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그 외 구비사항은 생략하오니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합니다.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다자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300퍼센트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400퍼센트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 한국감정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 전용면적 85㎡ 초과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되,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제 우선공급* 적용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광역시) 민영주택 추첨제 공급 시 무주택자 우선공급 :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퍼센트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300퍼센트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대규모택지개발지구인 경우 지역구분 없음)하여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감정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 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 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첨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부적격 처리합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공동주택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자발표일부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청약접수일 기준 청약신청자격 변경요건 관련 -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① 청약예금의 신청주택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변경한 경우 해당 면적의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작은 면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하위면적 모두 신청 가능하므로 변경 불필요) ② 청약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① 기타 지역(지방)에서 수도권 지역 전입 시 청약접수 가능합니다.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이 충족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 간 청약예금 금액 차액발생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차액만큼 증액하여야 청약 신청 가능합니다. (감액 사유시 변경 불필요) • 거주기간 산정 시 유의사항 - 파주시(1년 이상) : 파주시 관내에 계속하여 거주한 경우 최초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합니다. (주의: 파주시→고양시→파주시인 경우 파주시에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 - 경기도(6개월 이상) : 경기도 내 행정구역간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예: 파주시→고양시→파주시)에는 합산이 가능하나, 경기도 외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다가 다시 경기도 행정구역으로 전입한 경우(예: 파주시→인천광역시→파주시) 새로 전입한 일자부터 산정합니다. - 수도권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변경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퍼센트,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300퍼센트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V 당첨자 발표, 서류접수 및 계약일정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계약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 일시: 2020.09.29. (화) • 확인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0.10.12. (월)~2020.10.14. (수) (10:00~16:00) • 장소 -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154(와동동 1408번지)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분양 홈페이지(http://unjeong-ipark-theterrace.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감정원(全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0.09.29. (화) ~ 2020.10.09. (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감정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0.09.29. (화)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구비서류 제출**

•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후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던 것을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체결하도록 함에 따라 계약체결 이전에 주택전시관에 방문하시어 아래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시고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당해 거주기간, 주택 소유, 배우자분리세대 등 확인)

- 정당당첨자는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우선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 또한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에 우선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비입주자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 예비입주자 선정에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합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일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 주택전시관을 방문,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간 이내 방문이 어려운 당첨자의 경우 주택전시관으로 통지 후 계약체결 전 자격검증서류 일체 및 계약체결 시 구비사항을 준비하시어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단, 계약체결 시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절차로 계약진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격검증 서류 제출은 계약 체결이 아닙니다. 적격 당첨자로 확인되신 당첨자는 정당계약일에 계약구비서류(인감증명서 등)를 준비하신 후 주택전시관에 내방하셔서 분양 계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자격검증 서류 제출시 계약구비서류(특히 인감증명서)는 접수받지 않으며, 분실의 우려로 보관하지 아니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구분	제출일자	제출방법	제출장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2020.10.05. (월) ~ 2020.10.08. (목) (10:00 ~ 16:00)	견본주택 방문 제출	-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154(와동동 1408번지)

■ 예비당첨자 입주자선정방법 및 유의사항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견본주택에 내방하여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사업주체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예비당첨자에 대한 추첨 및 계약안내는 정당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대상자 소명기간 이후 예비당첨자 동·호수 추첨 및 계약 일시는 개별 통지할 예정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 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당첨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 소형・저가주택 1호를 보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인 1호 또는 1주택(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에 의한 민영주택의 일반공급[기관추천,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제외]시 적용합니다.

VI 계약 체결

■ 계약체결 일정 및 장소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비 고
당첨자 계약 체결	2020.10.12. (월) ~ 2020.10.14. (수) 3일간, 10:00 ~ 16:00	-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154(와동동 1408번지)	지정된 계좌 입금 후 입금증, 계약금 무통장 입금 내역서 지참

※ 순위내 청약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및 2순위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공급계약을 체결(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하나은행	188-910040-65004	㈜하나자산신탁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 필히 기재

- 계약금은 계약기간 내 계약금을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견본주택에서 현장수납은 일체 하지 않습니다.
- 계약금 잔여금, 중도금 및 잔금은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101동 202호 홍길동 → 101202홍길동)
- 타인명의로 입금하여 계약금 납부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계약금 미납으로 처리 될 수 있으며, 본인의 계약금임을 소명하지 못할 경우 중도금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수 있고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사업주체에서 책임지지 않으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계약시 구비 서류

구분	서류유형		구비 사항	발급기준	서류제출 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본인계약시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외국국적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본인	•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용도 : 공동주택 계약용), 계약자의 `본인발급분`에 한함
	○		인감도장	본인	•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제출시 생략 가능
	○		계약금 입금 영수증	본인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	1주택 실수요자	_	•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주택을 우선 공급받은 경우 (양식 홈페이지 게재 또는 견본주택에 비치)

			주택 처분 확약서		
부적격 당첨 통보자		○	무주택 소명서류	해당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부동산종합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인정서류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사항	○		인감증명서(계약자)	_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함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공동주택 계약 위임용), 계약자의 `본인발급용`에 한함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체결 장소 비치) - 대리인의 신분증 및 인장 - 대리인 중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인감도장(계약자)	_	
	○		위임장(계약자)	_	
	○		대리인 신분증 및 인장	-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2005.07.01 주민등록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조건 및 유의사항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이 되었으나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분의 청약통장은 계좌 부활되지 않습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당첨자는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기재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12개월간 청약이 제한됨)
 -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로 기재한 경우와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이력이 있을 경우
 -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계약 체결 후 부적격으로 판명 된 자는 소명기간 경과 후 환불신청서 제출 시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이자는 없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지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

상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구조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단,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1. 같은 순위(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2.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자 중도금 대출안내

- 총 분양대금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지정하는 대출금융기관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 조건이며, 중도금 대출 이자는 계약자가 납부하여야 할 월상환 대출이자를 분양계약의 정상적 이행조건하에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고 대신 납부한 이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게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이자를 일시 상환하여야 하며, 대신 납부하는 기한은 대출개시일로부터 사업주체가 통보하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이며, 그 이후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금융관련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규정, 계약자의 개인사정 (신용불량, 대출한도초과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
- 금융관련정책, 대출기관의 여신관리 규정,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관리 규정 등을 감안한 대출(이하"적격대출")시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계약금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도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 이전에 본인의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 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정부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며, 적격대출은 금융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 한도 및 건수 초과, 한국주택금융공사(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대출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대한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세대 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약정 기간은 중도금대출 최초 실행일로부터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이며 대출이자는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대납 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중도금대출금 상환 및 중도금대출 대납이자 등을 일시 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한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사무소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 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율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계약체결 후에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이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견본주택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견본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향후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Ⅶ 선택품목 계약

■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 「주택법」 제54조 제1항 제2호나목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당첨자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1) 마이너스 옵션 적용품목 및 범위(기본선택 품목)

구분	품목	적용범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공급품목
일괄 선택	문	각실 출입문	문틀, 문짝, 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목창호(공틀 포함)의 가틀, 문틀사춤, 플라스틱 창호내창 발코니 내부 플라스틱 창(시트지 제외), 현관 방화문, 현관 도어락, 대피공간 문짝
	바닥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다락방, 테라스	바닥마감재(지정 마루판, 타일, 석재, 걸레받이)	바닥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및 배수슬리브
	벽, 천정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다락방	벽지 및 천정지, 걸레받이, 거실 아트월, 발코니 벽 및 천정도장, 주방벽 타일, 몰딩(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포함)	벽: 단열+석고보드 또는 미장 또는 콘크리트면처리 천정 : 천정틀, 석고보드, 커튼박스
	욕실	공용/부부욕실	벽/바닥 타일, 천정재, 석재, 재료분리대, 코킹, 위생기구(욕조, 샤워부스, 양변기, 세면기, 수전류), 악세서리류, 욕실장, 욕실폰, 욕조 및 뒷선반, 욕실환풍기, 콘센트,	방수(바닥,벽체), 설비배관(급수,급탕 등 매립배관),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	주방 및 식당, 다용도실	주방가구 상/하부장 (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아일랜드주방, 주방벽타일, 렌지후드, 주방수전, 씽크볼, 절수기, 주방TV, 음식물탈수기, 기본주방가전일체	설비배관, 전기/통신 배관배선, 주방배기덕트
	조명기구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다락방, 테라스	부착형 조명기구 일체(욕실등 포함)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가구 및 기타사항	각실, 거실, 주방, 현관, 발코니, 다락방	현관 신발장, 거실, 주방 및 팬트리, 침실 붙박이장(도어포함), 각실온도조절기, 드레스룸장/파우더장, 시스템선반, 다용도실 및 발코니 수전	월패드, 에어컨 냉매배관

※ 평형 및 타입별 품목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마이너스 옵션금액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85A	85B	85E(Ba)	85C	85D	101A	101B	101C	101D	124A	124B	124C	124D	비 고
판매가	26,811,243	26,858,610	26,858,610	27,059,919	27,059,919	31,706,747	31,934,433	31,785,750	31,785,750	38,144,438	38,279,402	38,193,299	38,193,299	

3) 마이너스 옵션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분양계약 시 선택 가능하며,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선택 후 취소가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확장, 확장형가구 및 추가선택품목을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합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시 쿡탑이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경우 소방법에 의거 가스 또는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주거용 자동소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이너스 옵션부분의 시공·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해야 하며,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자는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공사, 시공사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공동주택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따라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호수가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 세대의 피해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자는 기본 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시공, 설치관련 확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개별입주자가 마이너스 옵션 마감재 및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할 경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설계기준 및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금액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85A	85B	85E(Ba)	85C	85D	101A	101B	101C	101D	124A	124B	124C	124D	비 고
확장 금액	5,840,000	5,380,000	5,900,000	6,640,000	6,820,000	7,040,000	6,310,000	7,390,000	6,310,000	6,610,000	6,230,000	6,860,000	5,780,000	
계약금 (20%)	1,168,000	1,076,000	1,180,000	1,328,000	1,364,000	1,408,000	1,262,000	1,478,000	1,262,000	1,322,000	1,246,000	1,372,000	1,156,000	계약 시
잔 금 (80%)	4,672,000	4,304,000	4,720,000	5,312,000	5,456,000	5,632,000	5,048,000	5,912,000	5,048,000	5,288,000	4,984,000	5,488,000	4,624,000	입주지정일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호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2005년12월2일 개정시행)
- 발코니는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하여 견본주택에 설치하였습니다. (단,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발코니 확장공사는 시공될 수 없습니다.)
- 발코니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등) 및 확장시 제공품목 등의 구성을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적으로 확장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질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달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를 통해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의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을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 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이중창호로 설치되며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세대(비확장 세대) 선택시 냉매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치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시에는 확장 된 발코니 일부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정이 분양 카탈로그 및 분양 홍보물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 할 수 있으며,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계약자가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주기적인 실내환기는 결로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 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 및 일부 벽체의 돌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전시하며, 비확장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가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치 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사무소(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의 경우 난방 장비용량 증설에 따른 비용 및 난방부담금은 입주시점에 공동주택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며, 난방효율이 저하 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개별 입주자가 발코니 확장 및 마이너스옵션 마감재를 개별 시공 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세대 및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본 공동주택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형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창호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확장하지 않는 발코니는 단열공간이 아니므로 단열재 시공이 되지 않습니다..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이중 창호, 단열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설치 등으로 인한 벽체 돌출, 우물천정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시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및 우천 시 소음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2)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하나은행	188-910040-85404	㈜하나자산신탁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 발코니확장 금액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무통장 입금 포함) 시, 동·호수 6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 101동 202호 홍길동 → 101202홍길동)
-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금액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 품목**

- 추가선택 품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사업주체가 제시하여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 품목 중 일부는 선택 품목에 따라 발코니확장 선택시 또는 발코니확장+확장형가구 선택시에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추가선택계약이나 계약변경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선택품목은 제품의 품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재 품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판매 금액은 기본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의 증가비용을 정산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별도의 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추가선택품목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며, 계약일정 및 대금납부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고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및 조명기구의 사양, 수량, 종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 외 추가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릅니다.
- 추가선택품목 사항은 견본주택을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확장형 가구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위치	품목명	판매가	비고
85 A,B,E(Ba),C	주방	펜트리 시스템 선반, 펜트리 가구도어, 키큰수납장(유리도어), 아일랜드 식탁(인조석 상판), BI김치냉장고(가구도어 포함)+키큰수납장	9,050,000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및 수납가구, 파우더룸		
	발코니	전동 빨래건조대		
	침실	붙박이장(1개소)		
85D	주방	아일랜드 식탁(인조석 상판), BI김치냉장고(가구도어 포함)+키큰수납장	7,160,000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및 수납가구, 파우더룸		
	발코니	전동 빨래건조대		
	침실	붙박이장1개소		

101 A,B,C	주방	펜트리 시스템 선반, 펜트리 가구 도어, 아일랜드 식탁(인조석 상판), BI김치냉장고(가구도어 포함)+키큰수납장	8,730,000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및 수납가구, 파우더룸		
	발코니	전동 빨래건조대		
	침실	붙박이장1개소		
101D	주방	펜트리 시스템 선반, 펜트리 가구도어, 아일랜드 식탁(인조석 상판), BI김치냉장고(가구도어 포함)+키큰수납장	8,130,000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및 수납가구, 파우더룸		
	발코니	전동 빨래건조대		
	침실	붙박이장1개소		
124 A,C	주방	펜트리 시스템 선반, 펜트리 가구 도어, 아일랜드 식탁(인조석 상판), BI김치냉장고(가구도어 포함)+키큰수납장	10,290,000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선반 및 수납가구, 파우더룸		
	발코니	전동 빨래건조대		
	침실	붙박이장1개소		
124B	주방	펜트리 시스템 선반, 펜트리 가구도어, 아일랜드 식탁(인조석 상판), BI김치냉장고(가구도어 포함)+키큰수납장	10,010,000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및 수납가구, 파우더룸		
	발코니	전동 빨래건조대		
	침실	붙박이장1개소		
124D	주방	펜트리 시스템 선반, 펜트리 가구도어, 아일랜드 식탁(인조석 상판), BI김치냉장고(가구도어 포함)+키큰수납장	10,110,000	
	안방	드레스룸 시스템 선반 및 수납가구, 파우더룸		
	발코니	전동 빨래건조대		
	침실	붙박이장1개소		

- 확장형 가구는 발코니확장 선택시에만 설치가 가능하고, 발코니확장 미선택 또는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는 설치할 수 없습니다.

2)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 (공기청정 GRILL TYPE))**

(단위 : 원/ VAT포함)

주택형	구분			판매가	비고
85 공통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080,000	LG전자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7,850,000	
101 공통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46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7,860,000	
124 공통	기본	3대	거실+주방+안방	5,480,000	
	전체	5대	거실+주방+안방+침실2+침실3	8,140,000	

- 발코니확장 선택시에만 시스템에어컨 설치가 가능하고,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시스템에어컨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 옵션에 따라 시스템 에어컨 수량 및 냉방 용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상기 금액은 이에 따른 비용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시스템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85,101타입은 5개소(거실, 주방, 안방, 침실2,3), 124타입은 6개소(거실, 주방, 안방, 침실2,3,4)에 냉매배관만 시공됩니다.
- 시스템에어컨 판매금액은 미선택시 적용되는 기본 냉매배관의 공사비를 차감하고 산정한 금액이며,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기본 매립 냉매배관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에어컨 개별 설치시 실외기실 출입문과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에어컨 개별 설치시 실외기실의 공간이 협소하므로 별도 확인 후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선택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 에어컨 설치로 인하여 우물천장의 크기/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시스템 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으로 제공되며, 추후 유선 컨트롤러 미설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무선 리모콘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되며, 시스템 실외기는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게 제품이 설치됩니다.
- 선택형에 따라 실이 통합되는 경우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개소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시스템에어컨은 LG 전자제품으로 시공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델과 브랜드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무상옵션(가변형벽체 통합형) 선택 세대는 냉방 용량이 부족하여 에어컨 성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옵션판매 설치 장소를 제외하고 시스템에어컨은 설치할 수 없습니다. (EX) 101 알파룸, 124 침실4, 다락방(D type), 보조주방 등)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시스템에어컨 옵션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실내기의 설치위치는 기능상 장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및 기타 세대내 조건에 따라 설치 위치의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 기 선정된 시스템 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변형 벽체 미설치시 시스템에어컨 설치 수량은 조정할 수 없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에어컨 및 기본 냉매배관은 해당 브랜드의 기준에 맞는 제품 선정 및 배관으로 시공하오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주방가전 및 엔지니어드 스톤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주택형	구분	제조사	판매가	비고
전기 오븐	공통	전기오븐 (MZ385EBT)	LG전자	320,000	
하이브리드 쿡탑 (3구)	공통	인덕션+하이라이트 (H-361DT)	하츠	300,000	
빌트인 냉장고	공통	양문형 (S711S1248)	LG전자	5,770,000	
엔지니어드 스톤 (주방상판, 주방벽, 아일랜드 식탁상판)	85 공통	확장형	롯데	2,070,000	아일랜드 측벽 : 가구판넬(85, 124타입)
	101 공통	확장형	롯데	3,310,000	
	124 공통	확장형	롯데	3,830,000	

- 하이브리드 쿡탑 미선택시 3구 가스쿡탑(하츠 GC-3605SASH)이 설치되며, 주방가전은 주방 구조에 따라 설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 선택은 발코니 확장 및 확장형가구 선택시에만 설치가 가능합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 미선택시 주방상판 및 아일랜드 식탁상판은 인조석, 주방벽은 타일, 아일랜드 식탁 측벽(85, 124타입)은 도배 마감됩니다.
- 엔지니어드 스톤 자재의 이음부는 자재 특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하자와는 무관합니다.

4) 대형보조주방+복도펜트리 및 슬라이딩 도어

(단위 : 원, VAT포함)

품목	구분	주택형	판매가	비고
대형보조주방+복도펜트리	대형보조주방 (바닥타일+벽·천정도장+슬라이딩후드+등기구+인덕션2구+인조석상판+가구) 복도 펜트리 (가구도어+가구판넬+등기구+시스템 선반)	124A, 124B, 124C	4,950,000	
		124D	4,640,000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안방 알파룸	124 공통	1,960,000	

- 주택형에 따라 제공되는 가구의 디자인, 장량, 설치위치는 상이합니다.
- 대형보조주방+복도펜트리 미선택시 침실4(대형보조주방)의 바닥은 강마루, 벽은 벽지 마감이 되며, 침실4(대형보조주방)+가족실(복도펜트리)의 등기구 사양이 상이합니다.
- 슬라이딩 도어 선택 여부에 따라 도어의 설치 위치, 스위치, 콘센트, 등기구 설치 위치는 상이합니다.
- 슬라이딩 도어 미선택시 여닫이 도어(목문)가 설치되며, 위치는 복도측입니다.
- 상기항목을 선택할시 대형보조주방+복도펜트리에 냉매배관 및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5) 추가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비고
확장형 가구	(주)하나은행	188-910040-85404	㈜하나자산신탁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성명 필히 기재 ex) 101동 101호 홍길동 : 101101홍길동
천정형 시스템 에어콘, 주방가전 및 엔지니어드 스톤, 대형보조주방+복도펜트리, 3연동 슬라이딩 도어	(주)하나은행	188-910040-83104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	

- 추가선택품목의 계약일정, 대금 납부시기 등은 추후 통보 예정이며,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판매금액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입금(무통장 입금 포함)시, 동·호수 6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101동 202호 홍길동 → 101202홍길동)
- 상기 납부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추가선택품목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 책임지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별로 납입계좌가 상이하오니 유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분양대금 입금계좌와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은 계약 당일 상기의 납부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납부한 무통장 입금증 또는 인터넷뱅킹 확인서 등은 계약체결 시 지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Ⅷ 기타 유의 사항

■ **입주자 사전방문(「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제21조제③항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입주개시 약 1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 확보하기 위하여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입주예정월 : 2022년 07월 예정**(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함.)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전쟁, 내란,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 파업 및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기타 택지개발 사업 미준공 및 공부 미정리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택지개발사업의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되며,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회사에서 선수관리비를 부과합니다.
- 사업주체와 시공사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말합니다.)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입주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5조,「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경비실,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작은도서관, 지하주차장, 근린생활시설 및 주민운동시설 등

■ **일반 유의사항**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 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은 청구하실 수 없습니다.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청약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이 불가합니다.
- 본 공동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변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업체, 부동산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지적확정측량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고 소수점 이하의 오차 범위 내에서는 별도 정산을 하지 않기로 하며,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와 등기부상의 면적차이에 대하여 분양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합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공동주택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 등은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된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 하여야 함.)
- 본 공동주택의 공사중 천재지변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동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공급가격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판매시점에 따라 향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개별적인 확장공사 또는 인테리어 공사 등으로 인한 세대 내 외부 파손 및 훼손사항은 본인 책임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합니다.
- 본 공동주택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이후 입주자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내외, 공용부분 시설물)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시「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시, 외국인토지법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토지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시, 외국인토지법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신고를 해야 하고,
 - 영리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후 토지 취득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취득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앞 보도블록은 향후 인.허가 및 실 시공등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예정부지 내 학교설립 확정여부와 개교시기는 관련 법령 및 규칙에 의거설립 제반 절차(학교설립계획심의, 재정투자심사 등)를 통해 최종 확정됩니다.
- 본 공동주택 입주민의 초·중학교 배정은 초등학교의 경우 가온초등학교, 중학교의 경우 입주시기 기준 운정1중학군(산내중, 지산중, 한가람중, 해솔중, 산들중)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홍보물

- 견본주택에는 85A, 124D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 및 연출용 시공부분, 카탈로그, 팜플렛 등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결과에 따라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에 제시된 저층부 필로티 등 입면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향후 실시설계 시 동선의 개선 및 개방감 확보 등을 위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의 전시품(모형 등)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포함 품목과 전시품, 옵션품목이 혼합되어 시공되어 있으나, 본 공사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고, 옵션품목은 유상으로 추가 선택시에 설치되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화재감지기는 소방법에 따른 견본주택 설치 기준이며, 본 공사 시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다만 화재감지기는 소방법에 맞게 위치 및 수량이 변경됩니다. (소방설비는 소방법에 맞춰 설치됨.)
- 견본주택에 설치된 분전반·통신단자함, 조명기구, 콘센트, 스위치의 제품 사양 및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본 공사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선홈통, 냉매박스, 실외기 배관, 바닥배수구, 위생기구, 욕실 악세사리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제 시공 시 협력업체 계약에 따라 각 협력사가 보유하고 있는 디자인 재질 등으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하게 시공 될 수 있으며 동등 이상의 성능제품으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 안내책자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가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적용된 마감자재는 자재 품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의 부득이한 경우와 사업자의 시공여건 또는 신제품의 출시에 따라 동급 이상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 및 모형, 홈페이지상의 마감재리스트, 인쇄물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도면과 다를 경우 도면을 우선으로 함.)
- 현관디딤판, 화장대 등에 사용되는 엔지니어드스톤은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무늬가 균일하지 않을 수 있고, 본 공사시 견본주택에 설치된 자재와 색상 및 석재의 결은 다를 수 있으며, 공장생산자재(타일 등)의 경우, 자재 자체의 품질 상 하자의 판단은 KS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 인터넷홈페이지의 VR동영상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사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을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공급안내문 및 카탈로그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발생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경미한 사업계획승인변경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상의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옥탑부,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외벽로고사인, 외벽마감, 식재, 포장, 단지 내 시설물, 어린이놀이터, 작은도서관, 주민운동시설 등의 계획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시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인 동호수 지정 시 동일평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 등에는 소비자의 주택형에 대한 인식의 편의를 위하여 간략한 표기를 한 부분이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동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 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시 포함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세대 선택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및 설계관련 주요사항**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공통사항

- 본 공동주택은 관계법령의 변경, 인.허가 및 실 시공등 구조/성능/상품개선(지붕, 옥탑, 전후면 외관, 측벽, 동출입구, 발코니 앞 장식물, 창틀 및 난간, 입면, 경비실, 문주, 부대복리시설 등)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 주택법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조경, 저층부 외벽마감, 동 현관, 지하 출입구, 지붕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문주 조명, 주차장 진·출입 차량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내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 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며, 단지내 지상도로가 있더라도 단지배치 특성상 일부세대에는 이삿짐 사다리차 진입이 어렵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는 담장개방화 및 안전관리 시스템을 위하여 CCTV를 설치함에 따라 프라이버시 침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지하수위 저감을 위한 영구배수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이에 따른 관리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역 내 및 그 외 타 지역의 타사 또는 사업주체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편의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분양아파트와 충분히 비교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엘리베이터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전용면적(공용면적제외)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내부구조의 위치 또는 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계약면적 외의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단지 내에 건립 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합니다.
- 본 단지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복합된 시설임을 인지하고 향후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와 관리자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과 복도,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타용도의 배관 및 배선들이 설치 또는 통과할 수 있음을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발전기 및 지하시설물 환기용 급, 배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 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 등을 위한 시설물이 노출되어 있으며, 지하 환풍구 소음이나 바람에 일부세대는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의 지상구조물 및 환기그릴에 의해 일부 저층 세대의 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고 소음과 냄새,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 레벨은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옹벽 또는 사면의 노출범위 및 형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지에 면한 인접대지 수목으로 인해 호수조망권이 불리할 수 있으므로 청약 접수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배치 및 조경

- 단지 내 조경 시설물 및 포장, 식재 등은 각종 심의 및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여건에 따라 수량, 규격, 종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동선, 기능, 디자인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물 및 포장의 재료, 색채,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해 각 세대의 배치에 따라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 및 지반레벨(계획고)은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하부 커뮤니티 시설,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각 차량 및 보행자 출입구의 차별화 디자인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측량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단지 레벨 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3) 주동 공용시설 및 입면

- 주동 저층부는 석재 및 몰딩설치에 따른 입면 돌출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동 저층부는 외벽 일부분은 석재마감 되며, 필로티 내부등 일부분은 뿜칠마감 됩니다.
- 필로티가 설치되어 있는 일부 동의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한 소음 발생으로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바닥 난방의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세대의 경우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장애인 경사로 설치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지역 가스정압기 및 전기변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저층부 세대는 보행자 통로, 단지 내 조명, 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등에 표현된 입면은 실제 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옥탑층에 공공조경부분의 관리를 위한 계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되며, 유지/보수/관리 등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입면에 세대 주방 및 욕실 배기를 위한 후드캡이 설치되며, 설치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동 입면에 우수, 배수 등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설치되며, 미관 훼손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103동, 108동 지상층출입구 상단의 캐노피는 다른동과 크기가 다르며,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입면의 색채계획은 향후 최신 트랜드 및 시공사 특화에 따라 색채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주차시설

- 지하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구조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되나 동별로 주차장 접근성 및 편의성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주차장으로 외부에서 비, 눈 유입이 있거나 바닥을 청소하는 경우 등으로 인해 주차장 바닥에 물이 고일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홀로 출입하는 통로는 동별 구조적 조건(통로폭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출입문 크기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차량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 차량출입구 및 램프캐노피 형태, 마감재 컬러 등은 사업계획승인 변경 또는 동선, 기능, 성능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교차로가 형성 되고, 교차 부분에서는 보행자 동선과 차량 동선의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해당동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해당세대에 주차 후 이동거리 증가, 근접한 주차면 부족 등으로 불편할 수 있으나, 이는 설계상 불가피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민원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의 차로폭은 6m로 구성되어 있고, 차로(출입구)의 높이는 2.7m로 계획되어있습니다.

5) 기타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의 외관 및 색상, 재료 등은 시공 중 경미한 범위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근린생활시설, 문주, 경로당, 주민공동시설과 인접한 일부 저층세대는 프라이버시가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근린생활시설 계획은 동선, 기능, 성능, 디자인 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공동주택단지와 별도구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용 에어컨 실외기 및 환기시스템 등으로 인해 인접한 일부 세대의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미관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옥탑 환기(탈취기) 및 실외기등을 위한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진동, 소음, 냄새, 분진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약접수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어린이놀이터 설치로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경로당,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 시설물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 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 단지 내에 쓰레기 자동이송설비(옥외) 및 재활용 보관소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 자동이송설비는 사용시 이용자의 주의가 필요한 설비로, 어린이 및 노약자의 이용은 자제하여 주시고, 반드시 주의사항 및 사용방법을 숙지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입주자 및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 발생시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쓰레기 자동이송설비 사용에 따른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 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가칭)"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옥외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설치되지 아니하며, 행정관서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민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작은도서관, FITNESS, 골프연습장 등)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은 분양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관련 시설은 입주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6) 단위세대

- 본 공동주택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사용 또는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 불가할 수 있으니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발코니부위에 설치되는 각종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미관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입상관, 배수드레인, 수전(세탁기, 청소용 등)의 위치 및 개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세대의 경우 발코니 배수 배관 노출로 인하여 안방 및 기타장소에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커텐박스의 길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D type 세대의 다락방의 경우 천정형 에어컨 설치가 불가 합니다. 또한 시스템 에어컨 관련 배관은 설치 되지 않습니다, (입주자 공사분)
- 세대 내 주방후드, 욕실 환풍기 배기는 직배기 방식으로 설치하며, 그로인해 냄새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과 발코니 샤시의 형태 및 사양은 제조업체,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의 거실, 안방을 제외한 침실의 경우 테라스 위치에 따라 창호규격이 상이하므로, 계약전 해당세대의 창호규격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동주택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옥상조경은 공용공간으로 임의로 변경, 전용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인접한 세대는 보안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관리 필요시 관리자가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 및 조치하여야 하며, 입주자의 부주의 또는 귀책사유로 하자가 발생시 그에 따른 보수 등의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신발장, 붙박이장, 화장대 등)의 도장 제품은 설치 후 시간 경과시 황변 및 표면의 평활도가 변형되는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 대비 도막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전기기(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류 설치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 및 사업계획승인 도면과 같으며, 그 설치공간보다 더 큰 가전기기는 해당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붙박이장) 설치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분전함 설치 위치는 주택유형별로 상이하며, 미건립세대의 경우 청약접수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내 전기 전원은 단상 220V로 공급됩니다.
- 세대내부 욕실 단차는 바닥구배 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거실 및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입니다. (욕실화의 높이와는 상관 없으며, 문 개폐 시 걸릴 수 있음.)
- 세대내 설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주방가구, 일반가구, 욕실장 및 거울설치 부위 등의 비 노출면(바닥, 벽, 천장)은 별도 마감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비 확장형 선택 시 가변형 벽체 설치 여부 및 일부 옵션품목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예정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으며, 엔지니어드스톤 옵션을 선택하지 않는 세대는 본공사시 주방상판에 뒤턱이 시공됩니다.

- 세대의 발코니 또는 실외기실 천정에는 환기용 덕트가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천정 마감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 배관 인입 위치에 따라 다용도실 창의 위치가 좌우로 다소 이동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주방 발코니 상부에 렌지후드 배기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및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싱크대 하부에는 온수분배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대 하부공간이 부분 수정 또는 사용공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소방법에 의해 공동주택 세대 내부 스프링클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단지 내 각 세대는 지역난방에 의한 기계설비시설물로 계획됩니다.
- 가변형 구조 변경 시 전기, 배선기구 위치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의 외관의 통일성 및 시각적 안정감 등을 위해 세대별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하였으며 비확장 선택시 일부 실의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승강기, 기계실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비확장시 가구배치 및 마감이 확장세대와 상이하므로 계약체결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내부 일반가구, 주방가구 등의 마감재 치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홈통이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상부층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홈통 배관이 세대내 일부실 천장속에 설치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방발코니 및 주방에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되며, 가스배관관경, 인입경로(위치)등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협의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의 가스계량기 위치는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간 경계벽 및 바닥구조(층간 소음 등)는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계 및 시공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소음, 세대간 벽 소음과 진동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보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전기 분전함, 통신 단자함, 급수, 급탕분배기, 에어컨 냉매 박스 등은 사업계획승인 도서와 다른 위치에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조명기구 및 스위치와 관련된 인테리어 공사 또는 하자보수 발생 시 반드시 해당 제조사로 문의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 시공사는 귀책사유가 없습니다.
- 공동주택의 외관 구성상 일부 세대의 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세대현관과 인접한 계단실 또는 EV홀 채광창의 위치는 동 호수 배치에 따라 각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단지 내 위치, 층수, 주변시설물 등에 의하여 세대 시야간섭, 일조량, 소음, 에너지소비량, 단열성능 등의 주거조건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의 모형 및 기타 분양 홍보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골조와 이질벽체(경량벽체 또는 조적벽 등)의 접합부 처리와 단열재 설치 등을 위하여 골조의 일부가 이격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골조와 조적벽체 등의 이질재료가 접하는 부분에는 크랙 하자 방지와 문틀 케이싱 설치 등을 위하여 일부 마감면과 골조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세대내부의 커튼박스의 길이 및 형태는 천장 내부의 설비 및 전기 배관 등의 시설물 위치로 인해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확장부위 벽체 등 내부 단열재는 마감두께확보 및 품질향상의 이유로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에 설치하는 가구 및 벽체 마감 등은 하자 및 사용성개선등을 고려하여 일부 견본주택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각 평형별 유상옵션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실시공시 세대내 화장실의 천장높이는 바닥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 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공사시 욕실 천정에 배관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되며, 위치는 현장여건에 따라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환기설비 설치, 세대별 골조 상이 등으로 천장높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외기와 실내간 온도차가 클 때 가습기사용, 장시간의 음식물조리 및 실내빨래 건조대사용 등의 상황에서 충분히 환기시키지 않을 경우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824)을 준수합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홈통 및 드레인 등이 계획 시공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선택시 가구를 설치하여 처리하더라도 미관상 저해될 수 있으며,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하여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발코니의 수도 및 기타 물이 들어있는 배관의 경우 동절기 관리소홀로 인한 동파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부 세대 비확장시 하부 세대 천장 부위의 추가단열공사로 인해 거실 우물천장 깊이, 폭, 커튼박스 깊이, 등기구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우물천장에 단이 추가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동일 평형, 동일 타입 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비 확장 발코니 및 발코니 확장 구간의 크기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선택시 세대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 확장한 경우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세대의 확장발코니 벽면 천정에 단열재 등이 시공되어 일부 벽체천정의 돌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절하게 설치되었으며, 입주 후 개별적으로 확장시에는 건축법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행정관청에 신고 및 관리주체에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실외기실 그릴의 재질, 색상, 모양, 크기 및 개폐방식, 개폐방향 등의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발코니 난간(투시형, 콘크리트난간)의 높이와 샤시 설치 높이는 실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확장시 마감재 설치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세대가 확장형을 선택하지 않고 인접세대에 발코니확장세대가 있을 경우 상호간의 안전한 차음성능 확보를 위해 콘크리트벽으로 구획이 되며 법적 단열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당해세대 발코니에 단열과 조적벽이 시공되어 불가피하게 발코니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창호난간의 보강 및 형태가 상이하여 조망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 85 C,D세대의 경우 신발장이 건립세대(85A)와 상이하오니,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85E(Ba) 주택의 경우 다용도실의 창문은 테라스 출입을 위해 견본주택(85A)과 다르게 설치됩니다.
- 4층 다락의 경우 바닥난방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주거공용공간은 층별, 주택유형별 크기 및 형태가 상이하므로 계약전 반드시 확인하여야하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단지여건

- 본 공동주택의 계약체결일 이후 주변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옹벽·석축 등의 종류·높이·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배치 상 세대 상호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어린이 놀이터, 주민공동시설, D/A(설비 환기구), 쓰레기 자동이동설비(옥외) 및 근린생활시설(실외기 등),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조망권·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 실외기는 101동, 102동 계단실 서측 2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전기용 D/A(설비 환기구)는 107동 1호라인, 108동 1호라인 사이에 설치예정으로 차후 변경될 수 있으며, 직간접적인 소음 및 냄새, 진동 등에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쓰레기 자동이동설비(옥외)는 104동 2호라인, 106동 4호라인, 109동 6호라인, 111동 1호라인 인접하여 설치되며, 재활용 분리수거함은 106동 4호라인, 109동 6호라인에 인접하여 설치됩니다. 쓰레기 자동이동설비 및 재활용 분리수거함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소음, 냄새 등에서 불편으로 초래할 수 있고 설치 위치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 확인하였고 이에 대해 지자체 및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재활용 창고는 지하1층 107동 인근에 설치되며, 위치는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동 옥탑에는 점검용 계단, 의장용 구조물, 야간 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이동통신기지국 또는 중계기,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위성안테나, 이동통신기지국 또는 중계기 등의 설치 위치는 해당업체의 의견 또는 시뮬레이션 등의 검토를 통하여 선정하여 설치하며,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7동과 108동 사이에 썬큰이 위치하고 있어, 이용객들에 의한 소음등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고 이로 인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및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108동의 필로티에 경로당 부대복리시설 입구가 설치되어 있어 부대복리시설에 인접한 일부 세대는 시설 이용객들에 의하여 소음 및 먼지,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주출입구, 부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등의 단지 내 시설물 및 호수공원 설치 조명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가로등, 경관조명 등 공용시설 조명과 상가조명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 해솔마을7단지 공동주택 등 당 공동주택 층수 대비 고층 주거시설이 존재하여 당 사업지의 동, 층, 향의 배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환경권·사생활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항에 대해 지자체 및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지 인근에는 어린이집, 유치원등의 편의시설이 위치하여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인한 이의제기를 지자체 및 사업주체, 시공사**에게 할 수 없습니다.**
- 파주운정신도시 개발지구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 사업부지 외의 개발계획 및 기반시설은 국가기관, 지자체 및 해당 공사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개발계획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 중 일부 변경·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시기가 지연될 수 있고, 시행자 및 시공사는 책임이 없습니다.
- 파주운정신도시의 토지이용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변경·조정 될 수 있습니다.
- 파주운정신도시 건설사업은 연차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타 블럭에 대한 조성공사 및 건축공사가 일부 진행 또는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으로 공사로 인한 소음 및 비산먼지,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지구 내 및 인근의 신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일정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등에 따라 개설시기 등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주변 공원계획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실시계획에 따라 향후 변경 가능하며, 견본주택 및 기타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경관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보수/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조명, 단지 홍보물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운영 및 유지 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일부 복합된 시설임을 인지하고 향후 타용도의 입주자(입점자) 및 이용자와 관리자가 공동주택 공용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음과 복도,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타용도의 배관 및 배선들이 설치 또는 통과할 수 있음을 인지 및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동주택은 각 동호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접세대간 프라이버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고, 각 동호수별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의 특성상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출입램프 포함)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동별 주동 출입구는 동별 특성에 따라 디자인 및 높이, 폭, 동선 등이 상이하며 주동 출입구로 인해 인접세대에 소음, 일조권, 조망권 등 환경권이 침해 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 및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커뮤니티시설(주민운동시설 등) 내부에 표현된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기기 및 비품 등)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주민부대복리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시설,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및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실제 시공될 시스템 등 설치품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외관디자인, 조경, 동현관, 필로티, 난간, 지하출입구, 공용홀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를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외부 시설물(문주, DA, 쓰레기분리수거장 등)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관계기관의 협의 및 디자인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고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주거동 외관 디자인(외벽의 줄눈, 리브형태 및 지붕모양, 입면마감재료 및 색채, 측벽, 몰딩, 창틀모양 등), 부대복리시설의 색상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토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재질, 색채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 부는 도로 및 공원과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수경시설 및 조경수의 종류, 수량 식재위치는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하여 설치나 식재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결과, 심의과정 등에 따라 조경시설물에 따른 조경선형이나 포장 및 조경시설물의 재료, 형태, 색채,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은 현장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본 현장 마감재 사양에 대해 타 현장과 비교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파주 운정 공공주택지구 외 인근 지역에 견사 위치, 파주 운정 공공주택지구 내 하수종말처리장, 단지 인근 근린상업지구 및 주유소용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미관상 불편함, 냄새, 소음, 기타사항 등이 발생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소송 및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당 현장 인근에(270m) 공용주차장이 위치하고 있어 통행 및 교통이 혼잡할 수 있으며, 운정호수공원에 인접한 세대들은 운정호수공원 행사에 따른 불빛공해 및 소음, 악취, 해충 등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여 생활에 지장을 줄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당 현장 103동 북측, 110동 일부, 111동 남측에는 호수공원의 보행로가 인접하여 호수공원 이용객들이 단지 내로 통행하거나 사생활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소송 및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당 현장 110동, 111동 사이 남서쪽에 인접한 호수공원 내에 공동화장실 위치하며, 111동 남동측에는 상업시설이 위치하고 있어 환경권・소음피해・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음으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당 현장 남서쪽 인근에 장미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이로 인한 해충피해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당 현장과 주변에 위치한 상업시설로 인한 교통불편 및 음식냄새로 인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에따른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당사업지 북쪽에 위치한 주택용지는 현재 개발진행 예정이므로 향후 공사에 따른 비산먼지, 소음, 기타 공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개발완료 이후에는 조망권에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동측에 공원으로 접근하는 보행자 통로가 신설될 예정으로 호수공원 이용객들이 단지 내로 통행하거나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 형사 상의 소송 및 이의 제기등을 할수 없습니다. 또한 관련된 보행자 통로에 관련된 계획은 관련 부서의 심의, 협의 따라 변경, 삭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 제기등을 할수 없습니다.
- 107동, 108동에 면한 주차장 출입구로 인해 차량출입에 관련된 진동, 소음, 배기가스, 주차장 천장으로 인한 빛 반사, 조망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 제기 등을 할 수 없습니다.
-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장소 중 중계장치는 지하1층 통신실(108동)에 설치되며, 옥외안테나설치위치는 해당없음으로 협의하였으며, 준공이후 추가설치에 대해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8) 테라스 관련 유의사항

- 본 공동주택의 테라스로 표기된 부분 중 1,4층 세대는 공용공간의 일부를 활용하는 공간이며, 2,3층 세대는 아래층 세대의 옥상을 활용하는 공간으로 연접한 해당세대의 전용공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본 공동주택의 테라스로 표기된 부분은 공용 공간으로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 각 테라스는 연접한 해당세대가 활용하나 공용설비 및 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진입 요구 시 개방하여야 합니다.
- 각 테라스는 활용하는 해당세대에 유지, 관리, 보수의 책임이 있습니다.
- 각 세대는 타 세대가 세대별 연접한 테라스를 활용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테라스 면적과 형태는 평형별, 층별 여건에 따라 상이하니, 계약 전 면적 및 형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상의 테라스 이미지는 참고용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하며, 견본주택 테라스에 설치된 소품 및 식재 등은 연출용으로 실제 제공되지 않습니다.
 - 제공품목 : 테라스, 난간대(1층 세대 목재 난간대, 2~4층 세대 철재 난간대로 시공되며 본 공사시 치수, 사양 등이 변경될수 있음)
 - 미제공품목 : 바닥 목재스타일 데크, 인조잔디, 각종 놀이기구, 운동용품, 테라스 물품 등 각종 디스플레이 소품 등
- 테라스공간은 별도의 수전 및 오수배관이 설치되지 않습니다.
- 테라스 바닥마감은 지정마감(타일류)이며, 본 공사 시 내구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배수구배 등을 고려하여 레벨차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2층 세대의 경우 우수 배관이 테라스 바닥 상부에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미관 훼손 및 소음 등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테라스 진입을 위해 외부 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테라스 외곽에 난간이 설치됩니다.
- 테라스 출입을 위한 창호의 핸들은 갇힘방지를 위해 수동락으로 설치됩니다.
- 세대 간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설치된 세대 간 경계벽, 난간대는 본 공사 시 높이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동주택의 테라스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에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건축기본마감(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 타일) 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설(데크, 타일교체, 조경, 파고라, 놀이기구 등) 설치 시 테라스의 허용하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설계조건에 대한 전문가에 확인하여 인접세대 및 테라스 하부세대에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제반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각 테라스는 하부 세대의 옥상의 일부 부분으로 별도의 층간소음차단재는 설치되지 아니하며, 상부 세대의 테라스 이용에 따른 진동, 소음 등이 발생하여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테라스하우스의 구조 특성상 불가피한 사항이며, 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테라스에는 본 시공시 우수의 원할한 배수를 위하여 트랜치가 설치될 수 있어 사용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4층 세대의 테라스 이외 옥상조경은 공용공간으로 임의로 변경, 전용하거나 소유를 주장할 수 없으며, 인접한 세대는 보안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IX 인증, 감리, 분양보증 및 등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1조 제3항에 의거 인증서 표기

공동주택 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1. 공동주택명 : 파주운정1,2지구 B3블럭 공동주택
2. 신 청 자 :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3. 대 지 위 치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11
4. 성 능 등 급

가.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경량충격음 차단성능	★★★★
2.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
3.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5. 화장실 급배수 소음	★★★★

나.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변성	★★★
3.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다.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
2.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
3.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
4.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
5. 에너지 성능	★★
6.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7. 신·재생에너지 이용	★★
8.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9.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
10.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11. 저탄소 자재의 사용	★
12.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13.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14.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15.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16. 빗물관리	-
17. 빗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
18. 절수형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다. 환경 관련 등급(계속)

성능항목	성능등급
20. 연계된 녹지축 조성	-
21. 자연지반 녹지율	★
22. 생태면적률	★
23. 비오톱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5.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메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14. 방범안전 콘텐츠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회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3월 25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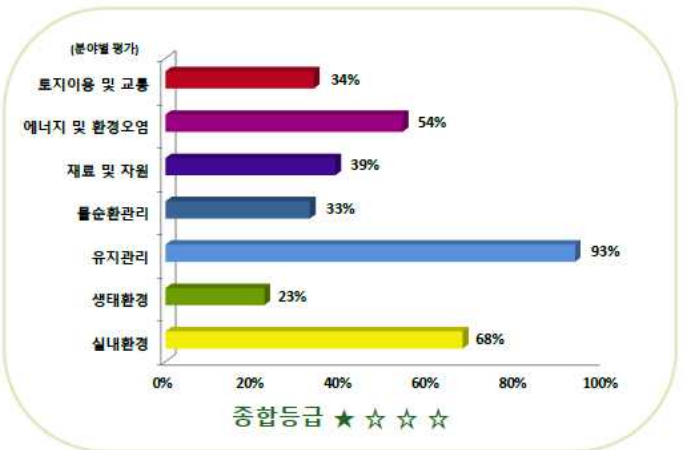
한 국 감 정 원 장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 축 물 명	파주운정1,2지구 B3블럭 공동주택	인 증 번 호	2020-072
건 축 주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인 증 기 관	한국감정원
준 공 (예 정) 일	2021.08.31.	유 효 기 간	2020.03.25. ~ 사용검사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11	인증 등급	
층 수	지하1층, 지상4층	인 증 등 급	일반(그린4등급)
연 면 적	42,406.6284㎡	인 증 기 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10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19.09.01)
건 축 물 용 도	공동주택		
설 계 자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그린4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0년 03월 25일

한 국 감 정 원 장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축물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변경예정)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7. 1. 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에는 해당하는 곳에 √표를 합니다.

건축물 개요		인증개요	
건축물명	: 파주운정1,2지구 B3블럭 공동주택	인증번호	: 19-주-예-1-1047
준공연도	: 2021년 08월 31일	평가자	: 이동영
주 소	: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11	인증기관	: 한국감정원
층 수	: 지하1층 / 지상4층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연 면 적	: 42406.6284(㎡)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인증등급**	
설계자	: (주)창조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kg/㎡·년)	비율량
에너지 저소비형 건축설계 0 100 200 300 400 500 에너지 다소비형 건축설계	103.4	에너지효율 높음 1+++ 1++ 1+ 1 2 3 4 5 6 7 에너지효율 낮음	1	CO_2 배출 적음 48 56 64 72 CO_2 배출 많음	27.2

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kWh/㎡·년)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61.4	81.0	61.7	13.7
급탕	30.7	39.9	31.2	6.9
조명	11.3	10.4	28.7	4.9
환기		3.6	9.8	1.7
합계	103.4	134.9	131.4	27.2

■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	에너지소요량에 연료의 채취, 가공,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_2 배출량	에너지소요량에서 산출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설치된[✔]설치되지 않은) 건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완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용도 등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19년 11월 11일

한국감정원장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예비인증서

인증번호: 제 2019-101-028 호

이 건물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인증업무 처리지침에 의해 다음과 같은 등급으로 평가되었음을 예비인증합니다.

※ 이 인증서는 2018년 03월 인증기준으로 평가한 결과입니다.
※ 이 인증서를 각종 광고 및 견본건물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려야합니다.

신청인		이 름	(주)하나자산신탁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그레이스타워 (역삼동)
건축물		이 름	파주운정 1,2지구 B3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주 소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411번지
인증내용		구 분	☐ 아파트 ☐ 업무시설 ☐ 오피스텔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기숙사 · 도시형생활주택
	인증등급	초고속정보통신건물	☑ 특등급 ☐ 1등급 ☐ 2등급
		홈네트워크건물	☐ AAA ☐ AA ☐ A ☐ 준A

2019년 04월 1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인)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등
고효율기자재	적용	전동기 / 급수펌프 :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사용
대기전력 차단장치	적용	거실 / 침실 / 주방 : 대기전력차단 콘센트를 각 1개소에 설치
일괄소등 스위치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공용화장실 : 자동점멸스위치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각 실 : 온도조절장치 설치
절수 설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 의무사항 적용여부**

의무사항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건축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1호)	단열조치 준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1호에 의한 단열조치를 준수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3호에 의한 바닥난방에서 단열재의 설치를 준수
	방습층 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6조제4호에 의한 기밀 및 결로방지 등을 위한 조치를 준수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목)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을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을 준수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 전동기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 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 난방, 급탕·급수펌프(마목)	적용	-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설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절수기기의 설치를 권장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 세대 내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고효율변압기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대한전기협회가 정한 내선규정에 따라 설계)
	조명설치(다목)	적용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제5조 제12호 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 거실, 침실, 주방에 대기전력차단콘센트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적용	-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의 사용여부에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소방감리	통신감리
회사명	㈜아이티엠코퍼레이션건축사사무소	㈜나로이엔씨		
감리금액	₩1,551,667,000	₩242,000,000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본 공동주택은 「주택법 제57조」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본 공동주택단지 분양총액의 범위내에서 각 항목별 총액만을 공개하고,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사후 검증은 실시하지 않습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쟁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단위 : 천원, VAT포함)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택지비 (4)		택지매입원가	26,683,172	건축비 (58)	건축 (23)	철근콘크리트공사	22,532,026	건축비 (58)	기계설비 (9)	위생기구공사	348,926
		기간이자	2,660,518			용접공사				난방설비공사	1,505,252
		필요적 경비	1,396,897			조적공사	1,089,867			가스설비공사	126,519
		그밖의 비용	5,862,929			미장공사	1,771,034			자동제어설비공사	55,660
		계	**36,603,516**			단열공사	423,297			특수설비공사	450,291
건축비 (58)	토목 (13)	토공사	1,583,710			방수,방습공사	783,342			공조설비공사	333,286
		흙막이공사	720,371			목공사	1,459,643		그밖의 공종 (4)	전기설비공사	3,915,147
		비탈면보호공사	36,245			가구공사	1,965,653			정보통신공사	575,328
		옹벽공사	325,703			금속공사	1,693,186			소방설비공사	1,207,760
		석축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19,462			승강기공사	45,599
		우,오수공사	149,008			창호공사	2,953,345		그밖의 공사비 (2)	일반관리비	986,390
		공동구공사	36,749			유리공사	428,162			이윤	1,479,584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82,055			타일공사	1,094,732		**계**		**65,422,802**
		도로포장공사	190,790			돌공사	2,894,959	간접비 (6)	설계비		1,166,000
		교통안전시설물공사	99,171			도장공사	754,149		감리비		1,793,667
		정화조시설공사	31,211			도배공사	369,776		일반분양시설경비		840,000
		조경공사	938,345			수장공사	1,303,948		분담금 및 부담금		698,346
		부대시설공사	840,685			주방용구공사	2,554,376		보상비		
	건축 (23)	공통가설공사	1,235,831			잡공사	895,248		기타 사업비성 경비		2,301,558
		가시설물공사	2,432,739		기계설비 (9)	급수설비공사	296,765		**계**		**6,799,571**
		지정 및 기초공사				급탕설비공사	74,191	그밖의 비용(1)			6,312,571
		철골공사				오배수설비공사	333,286	**합 계**			**115,138,46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제01292020-101-0007600호	₩80,597,230,00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분양보증 주요내용**

○ **보증사고의 정의(보증약관 제4조)**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요하지 아니합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당해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까지를 말합니다.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을 통지하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이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한다)에 게재함으로써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 제공: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기금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기재된 를 말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당해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 완료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의 환급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공동주택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대여하여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중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중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대여받아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 통지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관한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에 한하여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1.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 및 대출금융기

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2.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이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합니다.
3.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과 수탁자 ㈜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위탁자 겸 수익자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4.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분양계약자는 신탁사인 ㈜하나자산신탁을 상대로 준공건축물의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없으며, 하자보수와 관련된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수익자) 겸 시공사인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에게 있습니다.
5.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6.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7.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겸 시공사
상 호	㈜하나자산신탁	에이치디씨아이앤콘스(주)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 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일로 239, 분당아이파크 102동 8층 (정자동, 분당아이파크)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10111-6740008

입주자 모집공고		**2020. 09. 10. (목)**
견본주택 오픈		**2020. 09. 18. (금)**
특별공급	**신청**	**2020. 09. 21. (월)**
일반공급	**1순위 신청**	**2020. 09. 22. (화)**
	2순위 신청	**2020. 09. 23. (수)**
당첨자발표		**2020. 09. 29. (화)**
사전 서류 접수		**2020.10.05. (월) ~ 10.08. (목)**
공급 계약		**2020.10.12. (월) ~ 10.14. (수)**



총 186세대

분양문의 1600-0883

견본주택 주소: 경기도 파주시 가온로 154(와동동 1408번지)
홈페이지 : http://unjeong-ipark-theterrace.com/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대표번호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 법령이 우선하며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을 따릅니다.